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2025. 6. 13.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539호로 2025년 5월 30일 이성수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정원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구민참여를 유도하고, 마을정원사 육성 및 활용, 정원산업 육성 등을 규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정원문화의 육성 및 발굴·진흥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나. 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다. 정원문화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라. 정원박람회의 개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 다. 입법예고(2025. 6. 3.~2025. 6. 10.)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제정 배경 및 취지

○ 우리 구 현황

- 영등포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산이 없어 녹지 공간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이며, 과거 공업단지 및 노후 구도심 이미지의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녹지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따라 영등포구는 2024년 5월 8일 문래동 꽃밭정원 개장과 함께 ‘정원도시 영등포’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도시 이미지 전환을 위한 정원문화 확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2025년 1월 1일자로 ‘미래도시국’을 신설하고, 그 하위 부서로 ‘정원도시과’를 설치하여 정원문화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현재 적극 추진 중인 영등포구의 정원문화 조성 정책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정원도시 구현과 관련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정의)제1호에서 “정원”의 정의는 상위법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정의를 준용하였으며,

-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정의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서울시 정책 추진방향과 정합성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및 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등)는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정원문화 참여 정책 마련 ▲정원문화 활동 여건 조성 ▲민간 참여 활성화에 관한 구청장의 노력의무를 규정함.
- 안 제5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는 조례의 목적인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방향성을 제시함.
- 안 제6조(구민 참여의 원칙) 및 안 제7조(정원문화의 확산 장려 및 지원 등)는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정원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원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8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 및 안 제9조(마을정원사의 활용 등)는 안 제6조에 따른 구민참여 원칙의 구체화한 제도로, 단순히 마을정원사 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을 제고함.
- 안 제11조(정원문화센터의 설치·운영 등)는 현재 운영 중인 정원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12조(정원박람회의 개최 및 평가)는 법 제18조의 14(박람회 등 지원)에 따라 구청장은 정원 박람회 개최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바, 구청장이 직접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박람회의 발전을 위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평가를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여 성과의 환류를 통해 박람회의 수준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4(박람회 등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의 정원 박람회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검토결과

- 영등포구는 ▲문래꽃밭공원 조성 ▲정원문화센터 3개소 조성 ▲마을정원사 양성 ▲정원축제(정원소풍) 개최 등 과거 구도심 이미지 탈피를 위하여 정원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점 과제로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정원문화 진흥 및 확산을 위하여 행정의 안전성과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현재 추진 중인 정원문화 정책에 지속성과 공공성을 부여하고, 제도적 근거를 통해 정책의 안정적 실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

참고 자료

1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제18조의14(박람회 등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의 정원 박람회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
3. "시민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5.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통하여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화훼 관련 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국제교류사업, 정원치유 서비스 등을 말한다.
6. "지방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